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안 제7조의2)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나. 미생물 기탁 및 출원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조)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시 ‘미생물 기탁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기술 정의 반영(안 제9조)

우선심사 요건 중 ‘녹색기술’을 정의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를 반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거목 중 “책임질 수 없는”을 “정당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기후변화대응 기술”로, “청정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걸쳐”를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1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한다.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 하. (생략)

거.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

너. ~ 어. (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생략)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

1.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 정당한 -----

너. ~ 어.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

-----.

1. (현행과 같음)

2. -----기후변화대응 기술--

정 생산기술, <u>청정에너지</u>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u>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u>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 12. (생략) ② (생략)	----- <u>신·재생에너지</u> ----- ----- ----- ----- <u>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u> ----- <u>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u> ----- 2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8153